

의안번호	제 79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2월 일 (제296회)

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 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11월 12일

제5기 충청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

의안
번호

79

제출연월일 : 2010년 11월 12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우리도 특성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의 기반확충, 찾아가서 돌보는 건강증진사업 추진, 질병의 조기발견과 예방, 선제적 전염병 관리체계 구축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활성화 등을 실천하고,
- 의료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도민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열린 도정을 기조로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시행기간 : 2011 ~2014 (4개년)
- 주요내용

가. 중점 추진사업

- 중점사업 :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
- 개별사업 : 암관리, 건강검진, 전염병예방사업 등 19개 사업
 -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한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
 - 금연사업을 통한 흡연을 감소
 -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을 활용한 건강생활 실천
 - 건강 검진사업을 통한 질병조기 발견
 - 구강보건사업 확대로 구강질환 예방

- 암 관리사업을 통한 암발생 감소 및 적절한 치료지원
- 모자보건사업을 활성화해 모성과 영유아 보호
- 임산부, 영유아에게 지속적인 영양플러스 지원
- 지역사회 중심 재활서비스사업으로 장애인의 재활촉진
-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선제적 예방시스템 구축
- 결핵관리사업 추진을 통한 결핵환자 감소
- 공중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
- 식품안전을 위한 공급기반 조성 추진
- 정신보건사업을 통한 건강한 정신건강 확립
- 기타 한센인, 노인보건, 한의약, 응급의료사업 등 추진

나. 공공병원 시설 확충 및 기능강화

- 충주의료원 이전 신축 1개소 : 56,412백만원
- 청주의료원 증축 및 리모델링 : 17,854백만원
- 청주의료원 정신병동 신축 : 20,000백만원
- 충주의료원 기숙사 신축 : 15,000백만원
- 호흡기전문질환센터 설립 : 28,000백만원
- 의료기기임상시험센터 설립 : 2,844백만원

다. 보건기관 자원 확충 및 역량강화

- 보건소 등 보건기관 신·증축 : 60개소 19,500백만원
- 보건소 등 의료장비 보강 : 25개소 1,900백만원
- 도시형 보건지소 신축 지원 : 3개소 4,500백만원

라. 보건기관 인력확보 및 능력강화

3. 의안전문 : 불임 책자

4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5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관 계 법 령 발 체

□ 지역보건법

제3조 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)

- ①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. 이하 같다)은 지역 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당해 시·군·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·군·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 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·도지사는 관할 시장·군수·구청장, 지역주민, 보건의료관련기관·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시·도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·도의회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보건의료계획(이하 "지역보건의료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관련 기관·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및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그 요청을 받은 당해 기관·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□ 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5조(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시기 등)

- ①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 다만, 그 연차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